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18. 12.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6년 7월 26일 유의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6.11.8.)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었고, 2017년 7월 3일 김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7.9.14.)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8년 1월 2일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 1월 15일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8.2.21.)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8년 3월 7일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 4월 18일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

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8.11.19.)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2018.11.22.)에서 이상 6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라.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8.11.30)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시간이 흐르면서 지정 목적과 맞지 않게 된 토지가 계속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어 있거나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러한 수요가 파악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어 정기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되는 복구비용예치금의 사용범위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에 관한 규정을 하위법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포괄위임 소지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염해농지를 추가하고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차등하여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농지 소유 제한 등을 위반하여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농지 불법 소유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다년생 식물재배지 및 농지개량 정의규정의 위임 근거를 마련함
(안 제2조).

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사유가 소멸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원래의 농업진흥지역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다. 농업인주택·어업인주택 정의규정의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

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공유수면매립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추가함(안 제36조제1항)

마. 예치된 복구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이 종료된 후 농지로의 복

구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복구대행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6조제3항).

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차등하여 농지보전부
담금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7항).

사. 농지보전부담금의 독촉장 발급에 따른 납부기간을 10일 이내
에 30일 이내로 하고, 가산금 부과기준일을 명확히 함(안 제38조
제8항 및 제9항)

아. 용도변경의 승인 신청 절차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0조제1항).

자. 농지 소유 제한 등을 위반하여 거짓 등의 부정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안 제58조 및 제
59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 중 “다년생식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 식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본문 중 “농지개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변경 절차나 해제 절차”를 “변경 절차, 해제 절차 또는 환원 절차”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농업보호구역”을 “제1항 단서에 따라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거나 농업보호구역”으로 한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농업진흥지역 관리를 위하여 매년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 및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해당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중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나. 설치 규모, 염도 측정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시설일 것

제36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예치된 복구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이 종료된 후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복구대행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3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최초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후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려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비용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용이 재산정한 복구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제36조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36조의2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예치된 복구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이 종료된 후 농지의 복구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복구대행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38조제7항 중 “한다”를 “하되,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차등하여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부과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10일 이내의”를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의”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제8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를 “납부기한까지”로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허가를 신청한 날
2.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3.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4.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신고를 접수한 날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으로 한다.

제5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 제59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제36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의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7항 각 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지전용부담금 독촉장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기한이 경

과하여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p> <p style="padding-left: 2em;">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u>다년생식물</u>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p> <p style="padding-left: 2em;">나. (생략)</p> <p>2. ~ 6. (생략)</p> <p>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u>농지개량</u>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p> <p>제31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p>	<p>제2조(정의) ----- -----.</p> <p>1. ----- ----- -.</p> <p style="padding-left: 2em;">가. ----- ----- -----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u> ----- -----.</p> <p style="padding-left: 2em;">나. (현행과 같음)</p> <p>2. ~ 6. (현행과 같음)</p> <p>7. -----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u> ----- -----.</p> <p>제31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p>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3.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4. ~ 9. (생략)

② ~ ④ (생략)

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 및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해당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1. 2. (현행과 같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4. ~ 9.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조성한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나. 설치 규모, 염도 측정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시설일 것

② (생 략)

③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신 설>

② (현행과 같음)

③ -----

-----. 이 경우 예치된 복구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이 종료된 후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복구대행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최초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후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④ ~ ⑥ (생략)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① ~ ⑥
(생략)

⑦농지보전부담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범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
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으로 한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하되, 농업진흥지역과 농업
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차등하여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부과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다.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
용허가를 받는 경우: 허가를
신청한 날

2.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날

3.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날

4.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
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
용하려는 경우: 신고를 접수한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 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 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제8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⑩ ~ ⑮ (생략)

제40조(용도변경의 승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 3. (생략)

날

⑧ -----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의
-----.

⑨ -----

납부기한까지-----

-----.

⑩ ~ ⑮ (현행과 같음)

제40조(용도변경의 승인) ①-----

-----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1. ~ 3. (생략)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2.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58조(벌칙) -----

-----.

1.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제59조(벌칙) -----

-----.

<삭제>

1. (현행 제2호와 같음)

3. (생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